

의안번호	2213311
의 퇴 인	한민수의원
회 답 일	2025. 12. 2.
추 계 번호	25B53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0만원(연평균 12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14조의2)	120	120	120	120	120	600	120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신설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시청권 보장, 국민 문화 향상,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방송 및 영상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둔(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98조의3(유료방송 자료의 신뢰 확보)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 방송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의 자료 제출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자료를 검증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의2(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신설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98조의3(유료방송 자료의 신뢰 확보)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이 제출한 유료 방송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의 자료를 검증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외국인 등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¹⁾’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312호)²⁾은 외국인 등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³⁾’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공익성심사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외국인 등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을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을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나, 유사사례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준용하여 추계함

1)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함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실시하는 공익성심사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으로,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로 본다.

3)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른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유사사례(통신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통신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 현황

(단위: 백만원)

유사사례명	위원회 역할	위원 구성	회의 개최 횟수
통신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4)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변경 등에 대한 공익성 심사 실시	•당연직(공무원): 9명 •민간위원: 6명	연평균 약 1회* (2021.7.~2025.6 4년간 총 3회 개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체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안에 따른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회의참석 사례금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함
 - － (민간위원 수) 6명으로 가정
 - － (회의 개최 횟수) 연 1회 개최로 가정
 -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⁵⁾
 -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0만원(연평균 12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방송분야 공익성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6	6	6	6	6	－	－
회의개최 횟수(B, 회)	1	1	1	1	1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만원)	120	120	120	120	120	600	120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p.222.)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